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가단8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임야 13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6. 9. 19. 접수 제599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 1945. 3. 16. C가 1945. 4. 16.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제1346호) 제5조 등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으로 보고 1994. 9.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관보에 공고(안동영림서공고 D)하였으며, 그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권리 신고자가 없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자신의 조부 E의 창씨개명한 성명이 C였고, 원고의 부 F이 이 사건 임야를 조부 E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원고가 다시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구 임야대장)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조부 E 소유였다거나, 원고의 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조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군다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취득하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9. 19.부터 10년이 지난 2006. 9. 19.경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